

규 칙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2018년 9월 17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37호

붙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5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u>간사와</u>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 ----- <u>부위원장과</u> -----.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u>간사가</u> 서명·날인한다. ④ (생략)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부위원장이</u> ----- --. ④ (현행과 같음)